

● 주차장관리규정시행세칙(070401)

제정 2003. 3. 13 규정 제88호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주차장관리규정(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시행세칙은 자체관리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장운영) ① 주차장운영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년중 계속 운영하되 주차장별 실정에 따라 사장의 결심이 있을 때에 한하여 휴무를 할 수 있다.

② 자체관리주차장의 운영시간은 규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동·하계 및 주야간으로 구분하며 공사의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 주차요금은 주차장 주변여건 및 물가상승 등 여러 사정에 따라 사장이 경감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가산금) 주차장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되 가산금은 해당 주차요금 4배의 금액으로 하고 주차요금과 함께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임의로 출차한 경우
2. 주차장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요금 납부 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까지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6조(주차료 납부조치) ① 주차장 운영시간중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적조회를 실시 차량소유자에게 “별지 1-1호 서식”의 1차 주차요금납입안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7일 이내로 한다.
② 제2항의 납부 독촉기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과 4배의 가산금을 부과하여 “별지 제1-2호 서식”

의 2차 주차요금납입안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15일 이내로 한다.

제7조(주차료 미납차량관리) 제6조 제3항에 의한 주차료와 가산금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9조 제5항에 의거 자동차 압류 촉탁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징수 위탁하여 계속 관리한다.

제8조(주차장관리) ① 주차장 근무자는 주차장 운영 시간전에 주차장에 도착하여 청결상태 및 주차장내에 주차해 있는 차량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근무자는 모든 차량이 균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며 주차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주차장 운영시간중 차량의 멸실 또는 훼손시 근무자의 불성실(근무지 이탈 등)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근무자가 변상 책임을 진다.

제9조(근무방법) 주차장 근무인원은 총 근무인원 중에서 교대 배치하되 주차장별 인원은 조정할 수 있다.

부 칙<03. 3. 13>

이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1호(제6조 관련)】

1차 주차요금 납입안내서

○ 귀하께서 경기주택도시공사 ○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신 후 주차요금을 미납하였기에 본 안내장을 교부합니다.

차량번호		주차일		주차시간	
주차요금		할인 및 선납금		미납금액	
납부기한					
납입방법	1. 공사 은행계좌 납부 ○ 계좌번호 : ○ 받는사람 : 경기주택도시공사 담당자 2. 직접 해당주차장을 방문하여 납부				

1. 본 1차 주차요금납입안내서의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9조제3항에 의하여 2차 주차요금납입안내서에 주차요금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합산 부과되오니 반드시 지정기간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자세한 문의는 해당 주차장이나 (031)225-381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별지 제1-2호(제6조 관련)】

2차 주차요금 납입안내서

○ 귀하께서 경기주택도시공사 ○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신 후 주차요금을 미납하였기에 본 안내장을 교부합니다.

차량번호		주차일		주차시간	
주차요금		가산금		총납입금액	
납부기한					
납입방법	1. 공사 은행계좌 납부 ○ 계좌번호 : ○ 받는사람 : 경기주택도시공사 담당자 2. 직접 해당주차장을 방문하여 납부				

- 1차 주차요금납입안내서를 발송하였으나 미납하여 주차장법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주차요금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합산 부과되었습니다.
- 본 주차요금납입안내서의 지정기간내에 반드시 납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오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해당 주차장이나 (031)225-381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